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철성 의원(찬성자:26명)

나. 의안번호 : 제 2389 호

다. 발의일자 : 2025. 02. 03

라. 회부일자 : 2025. 02. 06

2. 제안이유

- 최근 화재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세밀하고 과학적인 화재 원인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재, 안전사고, 감식, 감정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에게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감정 업무의 공정성과 비밀 유지를 위한 원칙을 마련함(안 제5조)
- 마.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화재감정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감정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사. 시장에게 감정자료 통계를 시책에 활용하고 유사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정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토록 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참조
- 다. 기 타 :
 - 1) 입법예고(2025. 2. 11.~2. 15.)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서울소방재난본부 내 화재증거물감정센터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¹⁾에 따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2024.10.30.)됨에 따라 명칭을 화재감정연구센터(이하 “감정센터”라 한다)로 변경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화재 감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표 1] 제정안 주요골자

목 차	주 요 내 용
안 제1조 (목적)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내에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2조 (정의)	· “화재”, “안전사고”, “감식”, “감정”, “감정물”, “증거물”, “감정인”의 용어 정의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 2. “안전사고”란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사고 3. “감식”이란 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 4. “감정”이란 감정물에 대한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 5.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과 감정시료 6. “증거물”이란 화재 및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물건 및 개연성이 있는 모든 개체 7. “감정인”은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해 과학적 감정 및 연구를 통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화재감정연구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

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감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안 제4조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인 서울소방재난본부 내에 화재감정연구센터(이하 “감정센터”라 한다)를 설치함. · 감정센터의 기능을 다음 각 호로 규정함. 1. 화재 및 안전사고 원인과 성상에 대한 과학적 감정·조사·분석·연구 2. 화재 및 안전사고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3. 화재 및 안전사고 피해저감을 위한 조사·분석·연구 4.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대형화재 등의 현장에 대한 감식·감정 5. 서울특별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감정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안 제5조 (감정원칙)	· 감정은 감정인의 양심에 따라 신속·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하며 감정인은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감정원칙을 마련함.
안 제6조 (화재감정자문단)	· 시장에게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재감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문 사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함. 1. 화재감정연구센터 운영 및 감정에 관한 사항 2. 재감정 필요성 여부 등 재감정에 관한 사항 3. 외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의뢰한 감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안 제7조 (감정결과의 공표)	· 감정결과의 공표는 법 제14조에 따르도록 함.
안 제8조 (통계관리)	· 시장에게 화재 감정 통계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유사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정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토록 함.

■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감정센터 운영 현황

-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감정센터는 본부장 방침으로 2019년 3월 ‘화재증거물감정센터 운영 계획(현장대응단-4774)’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운영중으로,
- 이후 2023년 7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시험기관²⁾으로 인정받았으며, 2024년 10월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한 상태임.

2)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는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 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 제품인증, 생물자원은행 및 타당성 평가·검증 인정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의 조직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KS Q ISO/IEC 17025:2017 에 의거하여 KOLAS 공인시험기관을 인정하고 있음.

- 현재 화재증거물감정센터는 서울소방학교 중앙훈련타워 내에 위치하면서 감정분석실, 화재실험실, 기록실, 증거물 보관실 등의 시설과 차량, 기계, 화학, 전기 분야별 전문 감정 인력 및 인력풀(각 소방서 화재조사관들로 구성)을 활용하여 증거물 감정, 제조물 결함 입증, 위험물 분석, 화재 재현 실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2]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개요

○ 소 속 : 서울소방재난본부 / 현장대응단 / 재난조사분석팀 ○ 인 원 :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5명 + 각 소방서 인력풀 활용						
인 원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장 차량 감정 1명 기계 감정 1명 화학 감정 1명 전기 감정 1명 인력풀 각 소방서 화재조사관 활용						
○ 시 설 : 서울소방학교 중앙훈련타워(은평구 진관동) - 기록보관실(8층), 화재감정분석실(8~9층) : 216㎡ - 화재실험실(10층) : 108㎡ - 증거물 보관실(11층) : 65㎡						
   						
분해검사·분석실(8층) 유류분석실(9층) 연소실험실(10층) 증거물 보관실(11층)						
○ 장 비 : 총 33종 40점 - 화재감정기관 보유장비 : 19종(선택장비 포함) - 추가 보유장비 : 14종(기록용 기기, 감식·감정기기 등) ○ 인력풀 운영(최근 5년간) ※ 24년 7월 감정센터 인원보강에 따른 운영 인력 감소 - 각종 주요 장비운용, 위험물 판정, 증거물 감정업무, 실험 등 활동						
구 분	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근무 횟수	561	113	127	88	140	93
인원(명)	1,529	252	352	203	396	326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39건의 감정업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20건, 2021년

366건, 2022년 330건, 2023년 385건, 2024년 43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표 3]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감정센터 실적('20년~'24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구	분	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계	1,739	438	385	330	366	220
화재증거물	감정	1,032	235	259	198	187	153
제조물	결함 입증	10	2	1	3	1	3
위험물	분석	353	107	63	77	106	-
화재 실험·연구	지원	271	67	42	41	63	58
제조사, 유관기관 등	합동 감정	73	27	20	11	9	6

- 이처럼 지속적인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전문인력의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과 화재증거물감정센터가 훈련탑 내에 임시로 위치하다 보니 장비 배치 공간 부족, 단수 및 난방 문제, 잦은 시설 고장 등의 불편사항이 상존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이를 근거로 감정센터의 대한 환경적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제정안 취지에 대한 의견

-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소방청장에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³⁾ 등 지정기준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춘 것

가. 증거물, 화재조사 장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

나.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보관할 수 있는 시설

다. 증거물의 감식·감정을 수행하는 과정 등을 촬영하고 이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처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

2. 화재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할 것

가. 주된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소방재난본부 내 화재증거물감정센터가 소방청장으로 부터 화재감정기관로 지정받음에 따라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감정센터의 설치와 운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본 제정안 마련의 취지는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후속조치라 여겨짐.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정의)는 “화재”, “안전사고”, “감식”, “감정”, “감정물”, “증거물”, “감정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2. "안전사고"란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3. "감식"이란 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 소지자
 - 4) 이공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식·감정 장비, 증거물 수집 장비 등을 갖추는 것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이란 감정물에 대한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5.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과 감정시료를 말한다.

6. "증거물"이란 화재 및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물건 및 개연성이 있는 모든 개체를 말한다.

7. "감정인"은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먼저, 안 제2조제1호의 “화재”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2조제1항제1호4)의 용어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음으로 안 제2조제2호의 “안전사고”는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5)에 따른 안전교육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사고로 정의하고 있는데
- 이는 감정센터의 업무 범위를 화재로만 국한하지 않고 소방이 발생원인의 조사에 참여하는 안전사고까지를 포함함으로써 화재 및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이하생략)

5)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사고”는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화재 및 재난·재해관련 사고를 말한다.
(이하생략)

사고 전반에 대한 감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어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 이어서 안 제2조제3호의 “감식”, 안 제2조제4호의 “감정”, 안 제2조제5호의 “감정물”은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⁶⁾에서 정의하는 용어를 일부 인용하고 있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안 제2조제6호의 “증거물”은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2조제1호⁷⁾에서 정의하는 개념을 준용하면서 적용 범위를 안전사고까지 확대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담고 있다 하겠음.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에게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해 과학적 감정 및 연구를 통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4조의 감정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해 과학적 감정 및 연구를 통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4조의 화재감정연구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6)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식”이란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정”이란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화재증거물, 감정시료를 말한다.
- (이하생략)
- 7)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거물”이란 화재와 관련 있는 물건 및 개연성이 있는 모든 개체를 말한다.
- (이하생략)

- 이는 법 제3조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부합하면서,
- 감정센터가 소방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화재감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재정적 뒷받침을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다.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4조)

- 안 제4조(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내에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 감정센터의 기능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관련 ‘원인과 성상에 대한 과학적 감정·조사·분석·연구’,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피해저감을 위한 조사·분석·연구’와 ‘법 시행령 제7조⁹⁾에 따른 대형 화재 등의 현장에 대한 감식 및 감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4조(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내에 화재감정연구센터(이하 “감정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감정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및 안전사고 원인과 성상에 대한 과학적 감정·조사·분석·연구

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9)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란 다음 각 호의 화재를 말한다.

1.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2. 화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
(이하생략)

2. 화재 및 안전사고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3. 화재 및 안전사고 피해저감을 위한 조사·분석·연구
 4.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대형화재 등의 현장에 대한 감식 및 감정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감정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먼저, 안 제4조제1항은 현행 ‘화재증거물감정센터’를 ‘화재감정연구센터’로 개명하고 있는데 이는 센터의 업무를 단순히 감정업무로 국한하기 보다는 연구를 통해 그 범위와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바람직하다 사료됨.
- 다음으로, 안 제4조제2항의 감정센터 기능을 살펴보면, 화재 및 안전사고의 원인과 성상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조사·분석·연구를 포함하고 있고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그리고, 피해저감 대책마련과 대형화재 현장의 감식 및 감정을 아우르고 있어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예방대책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정원칙(안 제5조)

- 안 제5조(감정원칙)는 감정은 감정인의 양심에 따라 신속·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감정인은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제5조(감정원칙) ① 감정은 감정인의 양심에 따라 신속·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 이는 감정 업무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감정 업무가 가진 사회적·법적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마. 화재감정자문단(안 제6조)

- 안 제6조(화재감정자문단)는 시장에게 감정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재감정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역할로 ‘감정센터 운영 및 감정에 관한 사항’, ‘재감정 필요성 여부 등 재감정에 관한 사항’, ‘외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의뢰한 감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6조(화재감정자문단) ① 시장은 감정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재감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호에 사항을 자문한다.

1. 감정센터 운영 및 감정에 관한 사항
2. 재감정 필요성 여부 등 재감정에 관한 사항
3. 외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의뢰한 감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이는 화재감정자문단을 통해 감정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감정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 여겨지며 특히, 재감정 필요성 여부나 외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의뢰에 대한 자문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됨.

바. 감정결과의 공표 및 통계관리(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안 제7조(감정결과의 공표)는 법 제14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 이는 감정결과와 공표가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 하겠음.

제7조(감정결과와 공표) 감정결과와 공표는 법 제14조에 따른다.

- 여기서, 법 제14조¹⁰⁾의 경우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 단서 조문을 통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안 제8조(통계관리)는 시장에게 화재 감정 통계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유사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정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8조(통계관리) 시장은 화재 감정 통계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유사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정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이는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 한편,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증거물 및 화재감정서 등 기록물 보존)¹¹⁾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은 증거물 등

10)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① 소방관서장은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을 장기간 보존·보관하여야 하고 또한 증거물, 화재감정서 등 모든 기록물에 대하여 전자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고시 기준과도 부합한다 하겠음.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서울소방재난본부 내 현행 ‘화재증거물감정센터’가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화재감정연구센터’로 개명하여 새로이 설치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과학적 감정·조사·분석·연구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 하겠으며,
- 감정센터의 기능을 화재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포괄하고 있어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대응하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원인 규명과 분석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본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업무를 지원할 전문 인력 확충과 첨단 장비 확보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조례 시행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11)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증거물 및 화재감정서 등 기록물 보존) ① 화재감정기관은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보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화재감정기관은 증거물, 화재감정서 등 모든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화재감정기관은 증거물, 화재감정서 등 모든 기록물에 대하여 전자화를 추진하여야 한다.